



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

1 필수서류 수령

-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



2 장기요양기관 찾기



- 실거주지 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
 - 공단에서 제공받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목록 현황을 통해 확인
- 실거주지 외(타지역)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
 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→ 장기요양기관 찾기 → 장기요양기관 검색

3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

-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
-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(계약자),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
- 계약서의 계약기간, 급여의 종류, 내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입소비용 신청·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
 - ※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'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' 사용 권장



4 장기요양급여 이용


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 내용 확인 및 동의하고 급여 이용하기
- 급여종류
 -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
 - 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 - 특별현금급여: 가족요양비

5 본인부담금 납부

-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)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기
 - ※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입니다.

